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11. 13 선고 2020가단165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

전 문

원고A

피고B중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산우

담당변호사 유정훈

변론 종결2020. 10. 23.

판결 선고2020. 11.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경부터 C 등을 상대로 파주시 소재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의 소(서울지방법원 95가합70102호 등)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 진행 중인 1994. 4. 26. D 등과 사이에 위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는 경우 1개월 내에 종중을 구성한 후, ① 파주시 E 전 2,841m², ② F답 839m², ③ G답 1,937m², ④ H답 3,233m², ⑤ 파주시 I 답 2,866m², ⑥ J전 3,306m²(이하 '이 사건 약정 토지들'이라 한다)를 포함하여 총 46필지의 토지를 위 종중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 원고는 위 소송에서 1996. 6. 27. 승소판결을 받아 1997. 7. 28.

확정됨으로써 1997. 10. 9.경 위 토지들에 대해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D 등은 K씨 L를 중시조로 하는 종중을 구성하고 총회를 개최하여 대표자를 선출하는 등 절차를 거쳐 2005년경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약정 토지들 중 3필지(① E, ② F, ⑤ I)를 포함한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2007. 1. 24. 원고로 하여금 위 3필지 토지를 포함한 19필지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06나46577호)이 선고되었고, 쌍방의 상고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한편 이 사건 약정 토지들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환지 및 분할을 거친 후 2001년경 수용됨으로써 원고는 총 120,440,300원의 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다.

①	E	E	2001. 1. 31.	5,937,750
MN	2000. 10. 20.자 분할 2000. 10. 21.자 분할			
②	F	F	2001. 11. 6.	18,154,800
O	2001. 3. 26.자 분할			
③	G	P	2001. 11. 12.	469,650
	2001. 4. 17.자 분할	2001. 5. 10.	29,248,700	
④	H	I	2001. 5. 10.	48,818,300
⑤	I	Q	2000. 10. 20.자 분할	2001. 1. 31.
⑥	J		농지개량에 의해 R로 환지됨	
R	2001. 2. 12.자 분할	2001. 1. 31.	6,724,000	
S				
합계 120,440,300				

라. 원고는 2011. 7. 25. 피고에게 '원고가 첨부1(첨부1 표시 토지들을 이하 '수용된 토지들'이라 한다)과 같이 변제해야 할 현금 1억 2,044만 원에 대해 변제계획을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라고 기재한 확약서를 작성해 주었고, 위 확약서에 따라 2011. 8. 3.부터 2013. 5. 10.까지 피고에게 4차례에 걸쳐 총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1억 2,000만 원은 선행 소송에 따라 원고가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토지에 관한 수용보상금이 아니므로 피고는 이를 지급받을 법률상 원인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및 확약서에 따라 원고로부터 1억 2,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원고는 D 등과 사이에 피고 종중을 제3자로 하는 증여계약인 이 사건 약정을 체결하였고, 피고가 선행 소송에서 위 증여계약에 대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를 부담하며, 이 사건 약정 토지들 중 일부인 토지들이 수용됨으로써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되자 원고는 피고에게 그 대신 수용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약정 및 확약서에 따라 1억 2,000만 원을 보유할 법률상 원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수용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을 피고에게 이전해 줄 의무가 없음에도 이를 잘못 알고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있다고 착오하여 피고에게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는 취지로도 이해되나, 수용된 토지들은 모두 이 사건 약정 토지들에서 환지되거나 분할된 토지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수용된 토지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부담하는 것이어서,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고도 볼 수 없어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권미연

별지